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778호 2013년 6월 10일(월)

고 시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2

공 고

- 「속초시 지하수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3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1. 자연재해(태풍 및 집중호우)로부터 피해를 예방, 최소화하여 안전한 지역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속초시고시 제2013-4(2013.2.7)호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동명4지구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재난안전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6월 10일

속 초 시 장

- 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조서 : 별첨조서와 같음
나.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도 : 도면생략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지형도면 고시조서

1. 붕괴위험지구 지형도면 고시조서

지구명	위 치	지정내용			지정사유	비 고
		유형	등급	면적(㎡)		
동명4지구	속초시 영랑동 1-4번지 일원	붕괴위험	가	1,398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위험	
	속초시 영랑동 1-11번지 일원	붕괴위험	가	1,879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위험	

「속초시 지하수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속초시 지하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0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지하수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 「지하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지하수 관리위원회의 구성,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지하수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0조)

라.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5조)

마.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22조)

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제28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하수행정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100/ 강원도 속초시 해오름로 99(대포동 542)
속초시 수질환경사업소 하수행정담당(전화: 033-639-2931, FAX : 033-639-2497, E-mail : directgy@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수질환경사업소 하수행정담당 박동희 (전화번호 : 033-639-29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지하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揚水)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와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시설로서 자동 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말한다)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및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17조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시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퍼센트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5퍼센트로 하고,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현금이나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이 정하는 보증서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시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 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② 법 제33조에 의한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10%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음용수)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 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펜션, 음식점, 기타)
3. 준공 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4. 재검사 수수료

제6조(수질검사의 주기) ①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기간마다 수질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음용수 :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 3년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수질규칙 제11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의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음용수: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 6년

제7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속초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속초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속초시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2. 지하수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5급 공무원
3. 지하수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 및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하수영향조사 심사방법) 제7조제2호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는 경우 조사항목, 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영 제12조제1항의 별표 1에 의하여 심사한다.

제12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시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속초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세입) ①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제1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 내지 제8호
2.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

제15조(관리자의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위하여 부시장을 관리자로 한다.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톤)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퍼센트를 공급한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은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 부담금 산정은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 또는 시간계를 기초로 산정한다.

⑤ 유량계 또는 시간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직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 또는 시간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세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매월 계량한 요금은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사용종료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수시 징수할 수 있다.

③ 지하수개발·이용자는 납세고지서 또는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④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8조(부담금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감면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해서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가산금 등) ① 시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요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시(지방자치단체조함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기한까지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과오납금의 처리) 과오납금에 대한 충당 또는 환급 및 환급이자율, 환급이자 기산일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에 따른다.

제23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반행위 조사서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을 말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 44조 별표 7에 의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50퍼센트를 더하여 부과한다.

제25조(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지서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3조제3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징수한다.

제2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따르고,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는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변경 고시에 따른 자동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변경 고시될 경우 별도의 조례 개정없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자동 개정한다.

제3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유예) 제12조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에 국·도비 지원 등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설치를 유예하고 우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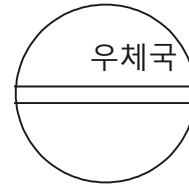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보내는 사람

납 세
고 지 서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받는 사람

우편반송용
바코드 17mm

과 세 근 거
「지하수법」 제30조의3 및 「속초시 지하수 조례」 제 18조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산금과 증가산금
「속초시 지하수 조례」 제 22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 난 날부터 가산금(3%)이 가 산되고, 체납된 지하수이용부 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 마다 (최대 60개월) 증가산금 (1.2%)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부담금 + 가산금(본세의 3%) + 증가산금(본세x 0.012 x 경과월수)

속초시	(수납은행 확인용)
-----	---------------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호	
------------	--

납기 내:	까지
세 목	납기 내 금액
합 계	

납기 후:	까지
납기 후 금액	

수납은행용 바코드	속초시장	직인
--------------	------	----

속초시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분) (납세자용)
-----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기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	------	---	----	----	----	----	---	----	-----	------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과세대상:	
-------	--

세 목	납기 내 금액	납기 후 금액	부과내역(과세표준)	납기 내
				까지
				납기 후
합 계				까지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문의처:
년 월 일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직인	수납인	전자납부 번호
---------	----	-----	------------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CP지 90g/m²)

안 내 말 씀

1.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출근거 : 「지하수법」 제30조의3 및 「속초시 지하수조례」 제18조
2. 납부장소: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장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군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게)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자	하수번호				정리번호	
	관 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대 표 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상 호 또는 건물명	
	대 표 자 성 명		업태		전화 번호	
신청내용	감면기간					
	감면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속초시 지하수 조례」 제20조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 15 -

위반행위 조사서

1. 대 상 자

가. 법인(상호)명 :

나. 대 표 자 :

다. 법 인 번 호 :

라. 주민등록번호 :

마. 소 재 지 :

바. 연 락 처 : (전화) (팩스)

2. 위반내용

3. 위반사유(※ 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20 년 월 일

진술인 : (인)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시행 :

수신 :

제목 :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하수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조에 따라 금○○원 (₩○○○○)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20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20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 부 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금 원 (₩)	당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부과기관		납부통지서 번호	
	고지받은 일자		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하수법」 제41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지서

시행 :

수신 : ○○법원장

발 신 : 속 초 시 장 (인)

제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하수법」 제41조 관련입니다.

2.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이의제기 일자		이의제기 사유	

붙임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담당공무원 의견서 사본 1부

과태료 수납부

[illegible]